

# 北韓 철자법의 體系와 變遷\*

李 承 旭

- |                      |                       |
|----------------------|-----------------------|
| I. 머리말               | IV. '조선말 규범집'(1966)   |
| II. 조선어 신철자법(1949)   | V. '조선말 규범집'(1988개정안) |
| III. '조선어 철자법'(1954) | VI. 맺는말               |

## I. 머리말

북한이 이른바 言語革命을 추진한 일 가운데서 文字生活의 規範化는 語彙整理의 문제와 함께 가장 힘을 기울였던 과업의 하나였다. 그것은 그들이 표방하는 言語觀이나 言語政策의 특수성으로 볼 때 오히려 당연한 歸結이기도 했다.

북한은 言語를 通信的 機能을 수행하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사회의 중요한 交際手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혁명과업 수행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므로써 사회 발전의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言語는 사회 발전의 목적에 따라 그 機能을 極大化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改變해 가야 한다고도 한다.

한편 言語는 音聲과 書寫의 양면성을 가지며 이들의 대립은 서로를 制約하는 여러가지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音聲言語를 書寫言語로 옮기는 데는 일정한 規則을 적용하여 규정하는 表記法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表記法은 言語의 사회적 실현을 改變하는 중요한 대상으로 떠

\*본 연구는 1990年度 文教部 共產圖研究支授金을 받아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오른다.

북한의 철자법은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출발하지만 초기의 상당한 기간은 역시 朝鮮語學會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이하 ‘통일안’(1933)이라 약칭함)을 準用하며, 1949년을 전후하여 한자폐지와 함께 철저한 形態主義 原則에 입각한 文字改革案을 전제로 하여 꾸며진 철자법이 提案된다. 表記法의 制定이 단순한 表音의 문제가 아니라 문법 연구의 總體的 結集이라고 할 때 그들이 提案한 철자법이 ‘통일안’(1933)의 기본적인 이론과 체계를 벗어날 만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나, 부분적으로는 종래에 金料奉 文法에서 주장되었던, 체계의 원리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案으로 그쳤을 뿐 실행되지 못하지만, 북한의 철자법의 胎動과 變遷을 論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하여 본고는 이를 起點으로 하여 현행의 맞춤법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表記法史를 살피기로 하는 한편 그들의 文法觀이나 政策이 이 분야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實現되었는가의 문제도 간접적으로 評價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비록 ‘통일안’(1933)의 原理와 體系에다가 기초를 둔 것이기는 하나, 그들의 獨自的인 表記法을 制定 公布하며, 몇 번의 改正을 거쳐왔다. 그리고 制定하기까지의 상당한 기간에도 많은 論難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변화의 轉移關係를 資料에 근거하여 차례로 살피려니와 그 資料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조선어 신철자법(1949) 조선어문연구회 「조선어 연구」 1권 5~7호

조선어 철자법(19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

조선말 규범집(19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

조선말 규범집(198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

## II. 조선어 신철자법(1949)

### II.1 이론적 배경

1947년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발족한 조선어문연구회<sup>1)</sup>는 그 시기의 당면한 과업의 하나로 漢字廢止와 文字改革을 전제로 하는 철자법의 새로운 제정을 내세웠으며, 그 試案을 발표하면서 그들은 ‘주시경 선생의 사상속에 배태되고 조선어학회에 의하여 계승된 철자법상의 형태주의 원칙을 더 한층 발전시킬 것이 요구’되었으며, 이 요구에 부합하는 ‘김두봉선생의 문법 내지 철자법상의 새로운 견해’를 토대로 하여 ‘조선어 신철자법’(1949)(이하 ‘신철자법’(1949)로 약칭함)을 성안하게 되었다고 하였다.<sup>2)</sup>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통일안’(1933)의 이론적 배경이나 표기 원칙에 대해 부분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기왕에 김두봉이 주장해 온 체계를 전폭적으로 반영한 조선어문연구회의 ‘신철자법’(1949)안이 발표된다.

‘조선어 철자법의 기초’의 제1부 ‘조선어 철자법의 기본 원칙’에서 철자법의 원칙에는 表音主義, 形態主義 및 歷史主義의 세 原則이 있다면서 그 長短點을 분석하는 한편 형태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가운데 철자법 규정의 필요성과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역사주의 철자법은 ‘오랜 인습과 전통의 산아인 만큼, …… 이제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이 철자법이 제정되는 조선어에 있어서는 도저히 기본원칙으로 될 수 없다’고 그 단점을 지적하였다.

표음주의 철자법은 첫째, 언어가 인간의 사회적 실천의 면에서 발생한 사유교체(思惟交替), 世界觀 交替의 축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의 의사, 사상전달과는 무관하게 무의미한 발음만 표시하려는 표음주

1) 이승육: “북한의 국어연구와 어문정책” 「동아연구」 제14집.

2) 조선어 철자법의 기초, <조선어 연구> 조선어문연구회, 1권 5호 p.154

의 철자법은 언어 내지 문자의 본질에 배치된다 하고 둘째로, 한 문자의 음가는 위치와 환경에 따라 다른 음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표음주의의 1자 1음, 1음 1자 주의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반면에 형태주의 철자법은 '인간의 사상전달, 의사표시라는 언어의 본질적 사명으로 부터 출발하며, 문자가 가지는 표음성과 표의성의 통일적 성격에 대한 성찰로 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언어에 있어 의미의 단위로 되는 최소의 요소, 즉 형태부를 그 표기의 기초로 삼으며 다 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1. 독서상의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2. 구두어(口頭語)에서의 同音異義語를 표기상에서 피할 수 있게 한다.
3. 단어의 조성, 이해에 편리하다.
4. 민족어의 통일을 촉진시킨다.

결국 그것은 주시경 선생의 '조선어의 형태론적 구조와 어음조직에 대한 깊은 성찰, 언어 내지 문자의 본질에 대한 투철한 이해, 그리고 과감한 개혁적 정신을 가진 것'의 산물이며, 나아가 그것을 계승, 발전시킨 김두봉의 새로운 견해를 토대로 한 것이 '신철자법'(1949)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신철자법'(1949)은 주시경 선생의 언어이론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김두봉의 견해에 따라 형태주의 원칙을 도입하게 되므로써, 조선어 학회의 '통일안'(1933)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별도의 철자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철자법'(1949)에서 '통일안'(1933)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를 살펴기로 한다.

첫째로, 그것은 철자법의 기본원칙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원칙적으로 형태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선적으로 표음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형태주의가 마치 어원주의인 것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기본원칙이 형태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조항에서 표음주

의에 빠져 버렸다고 지적한다. 즉, ‘한자어의 어두음 ‘ㄴ, ㄹ’의 처리를 표음주의에 빠져서 잘못 규정하였으며 (어두, 어중, 어말에서 ‘ㄴ, ㄹ’의 표기가 ‘ㅇ, ㄴ, ㅇ’ 등으로 차별 됨.) 용언의 표기에 있어서 언어 현실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다한 변격용언을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어의 형태적 구조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언어에 있어서의 형태론과 어음론의 호상관련성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며, 조선어문운동이 처한 역사적 단계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여 …… 결국 ‘통일안’(1933)은 주시경 선생의 학설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더 앞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단지 부분적인 개량에 그치고 만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런 결함을 보완한 ‘신철자법’(1949)은 형태론과 어음론과의 상호연관성, 성음의 면에 대하여 의미의 면이 가지는 우위성들을 옳게 인식하고 형태주의 원칙을 일관하여 채택한 철자법이라는 것이다.<sup>3)</sup>

## II.2 ‘조선어 신철자법’(1949)의 주요 규정

### II.2.1 맞춤법 규정

‘조선어 철자법의 기초’의 제2부 ‘조선어 철자법의 주요규정’<sup>4)</sup>에서는 구체적인 표기 규정에 대하여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이제 그 규정을 살펴 보기로 하자.

1. 한자어 표기에 있어서 어두에서 ‘ㄴ’의 구개음화에 의한 약화, 탈락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록 첫소리에서 ‘야, 여, 요, 유, 이’로 발음된다 할지라도 그 형태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냐, 녀, 뇨, 뉴, 니’로 적는다고

3) 이에 대한 내용을 총론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조선어 철자법은 현재 조선인민의 언어의식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일정한 형태로 표기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2) 조선어 철자법은 그 표기에 있어 일반어음학적 원리에 의거하되, 조선어에 고유의 발음상의 재규칙을 존중한다.

‘조선어 철자법의 기초’ 「조선어연구」 제1권 5호, 1949.

4) 조선어 철자법의 기초(2), <조선어연구> 제1권 6호, (1949. 9월호)

하였다. (첫소리 표기 ㄱ) : 여자(女子), 니토(泥土), 뇨도(尿道), 녕변(寧邊). 이런 경우 ‘통일안’(1933)은 첫소리에서 발음나는 대로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2. 한자어 표기에 있어서 어중 어말에서 첫소리에 있는 ‘ㄹ’은 발음이 ‘나, 야 ……’등으로 나더라도 그 형태부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ㄹ’로 적는다고 하였다. (첫소리 표기 ㄴ) : 락원(樂園), 량심(良心), 력사(歷史), 로동(勞動). ‘통일안’(1933)에서는 동일한 환경에서 발음에 따라 ‘나, 야 ……’등으로 적는다고 하였다.

3. 한 형태부 내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설측음은 ‘ㄹ’로 적는다. (가운데 소리의 표기 2) : 더령이(덜령이, 덜녕이) 시룩시룩(실룩실룩, 실눅실눅) …… 규정상으로는 설측음 표기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발음 현실은 설측음이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 시기의 ‘조선어 철자법’(1954) (이하 ‘철자법’(1954)로 약칭함)이 설측음의 표기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통일안’(1933)

걸레

얼른

‘신철자법’(1949)

거레

어른

4. 끝소리(末音) 표기를 위하여 기왕의 문자체제에는 없는 몇 개의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쓰기로 규정한 이른바 新文字制定이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끝소리의 표기)

가) 신문자 ㄲ

-ㄹ 내파음으로 발음되면서도 ㄲ로 표기해야 하는 예.(끝소리의 표기 1)

— 믿어다(可信) (믿어어, 믿어면)

나) 신문자 △

-ㄷ 으로 발음되면서도 △으로 적어야 할 예.(끝소리의 표기 2)

## — 걷다(步) (것어, 겹으면)

## 다) 신문자 ㄹ

— ㄹ로 발음되면서도 ㄹ로 적는 예.

## — 길(길에, 길을, 길'가)

5. 여러 형태부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구성할 경우, 형태부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시키면서 두 형태부 사이에 일어나는 특수한 어음현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분리부 (') 표를 두어 표기하였다.<sup>5)</sup>

1) 두 형태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화방지 악센트 현상을 표기하기 위하여 두번째 형태부의 두음을 된소리로 내는 경우 : 고'집[고쩨], 기'발[기빨], 나무'꾼[나무꾼] ……

2) 두번째 형태부의 두음이 '야, 여, 요, 유, 이'인 때, 악센트 현상과 함께 구개음화한 'ㄴ, ㄹ'소리가 나타나는 경우 : 갓'양, 겹'이불, 꽃'잎, 콩'일, 낫'요강, 논'일.

위의 4, 5항의 표기 방법은 철저한 형태주의 표기원칙과 현실음과의 차이를 새로운 문자의 표기에 의하여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즉 어간과 어미부를 분리하여 적는다는 형태주의 원칙과 현실적 발음을 완전히 무시하기 곤란하다는데서 오는 표기의 차이와 갈등에 대해 고심한 결과인 것이다. 표음주의를 배격하고 철저한 형태주의 표기법만을 고집한데 따른 새로운 표기 부호의 설정은 이러한 고심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6. 교체 [ㅂ] — [ㅇ] → 표기 ㅍ (11항)<sup>6)</sup>

(11항)은 'ㅂ'변칙의 용언 어간을 고정적인 어형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考案된 규정이며, '곱다(妍)의 활용형 '고와', '고우니' 등에 있어 —[w]의 교체를 마찰음 'ㅍ'로 표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서 어간을 'ㅍ'로 표기하면 그것은 언제나 고정된 단일어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국어에 있어 마찰음이 末音, 또는 발음

5) 조선어 철자법의 기초(2), <조선어연구> 제1권 6호, (1949, 9월호 pp.80-81)

6) 조선어 철자법의 기초(3), <조선어연구> 1권 7호.

되지 않는 다른 음 앞에서는 동일 조음 위치의 파열음으로 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곱아-’에서는 [w]로 발음되는 “ㄱ”자가 “곱다”에서는 [p]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이러므로써

곱다(屈指)[곱다]-곱아[고바]

곱다(妍)[곱다]-곱아[고와]

와 같은 교체 관계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한 형태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 견해는 김두봉이 일찍부터 제안해 온 이론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글자의 제작 원리와 발음 방법, 그리고 이것이 갖는 장점 등에 대하여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sup>7)</sup>

7. 교체 [ㄷ]-[ㄹ] → 표기 △ (14항) : 걸다-거러, 거러서 …… 이것을 ‘겻다(步), 겻어’로 적는다는 것으로 ‘ㄷ’받침 변칙 어간의 표기법을 이룬다. 훈민정음의 半齒音 △ 자를 부활시켜 쓰는 타당성을 설명하였으며 이러므로써 이것을 변칙이 아닌 규칙 용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8. 교체 [ㅅ]-零 → 표기 ㄱ (25항) : 짓다, 짓고, 짓지-지어, 지니, 지어서.

이 교체는 소위 ‘ㅅ’받침 변칙을 표기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으로, 이것을 ‘징다, 징어, 징고 ……’로 표기하여 형태부 [징]를 고정시킨다는 것이다. △의 경우와 같이 훈민정음의 ㄱ 자를 부활시켜 쓰는 근거는 이것이 제작 당시 성문 폐쇄음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성음 사이에서는 默音이 되고, 무성음 앞에서는 硬音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9. 교체 [ㄹ]-零 → 표기 ㄷ (26항) : 불다, 불고-부니, 부시니.

이러한 교체는 ‘ㄹ’받침 변칙의 표기법을 고정시키기 위해 역시 새 글자를 도입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불다, 불니, 불고 ……’로 표기하므로써 형태부 “불”이 고정된다. ‘불다’의 ‘ㄹ’은 다른 ‘ㄹ’음과는 달리 舌端正面

7) ‘조선어 신철자법’ 제2부 ‘조선어 철자법의 주요 규정’ (14항)참고

摩擦音이라 했고, 따라서 [ㄴ, ㄹ, ㅅ, ㅇ] 앞에서는 반드시 點音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질의 ‘ㄹ’을 ‘ㄴ’자로 표시하여 어간의 형태부를 고정시키면 ‘ㄹ-ㅇ’의 교체를 변격으로 보지 않고 다른 모든 교체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정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Ⅲ. ‘조선어 철자법’(1954)

#### Ⅲ.1 이론적 배경

비록 ‘신철자법’(1949)이 1949년 조선어문연구회에 의하여 만들어져 제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 사회에서 ‘신철자법’(1949)이 얼마나 널리 보급되었고 실제 생활에 사용되었는가하는 것을 알 수는 없다. 다만 1949년 중반에 발표된 ‘신철자법’(1949)은 1950년 6·25 사변 이후의 戰時라는 특수한 内外의 상황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 그 실시가 유보되었거나, 끝내 公布, 實行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예측되지만 그후의 歸趨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곧 이어 나오는 ‘철자법’(1954)을 미루어 볼 때 ‘신철자법’(1949)은 다만 試案에 그쳤을 뿐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듯한데, 그러한 推定은 ‘철자법’(1954)의 머리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다. “…… 또한 최근 조선어의 어음조직, 문법구조 및 어휘구성에 나타난 변화를 고려하여 종래 철자법(1954)의 規準으로 인정되던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 적지않은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sup>8)</sup>

그렇다고 할 때 ‘철자법’(1954)은 분단 후 북한에서 최초로 ‘통일안’(1933)과 대응하는 그들의 맞춤법을 公式化한 것이 되고, 그것은 역시 ‘통일안’(1933)의 골격을 벗어나지 않는 수정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이르는 과정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되며, 그런 가운데서도 특히 ‘신철자법’(1949)과의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고 그 영향권 하에

8) “조선어 철자법”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1954.

서 주도되었을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충분히 짐작된다.

‘신철자법’(1949)은 형태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한다는 대전제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문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형태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존의 표기 문자만으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어 새로운 문자를 제정해야 한다는 문자 개혁을 끈질기게 주장하였던 것이고, 그것을 반영, 적용한 것이 ‘신철자법’(1949)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자법’(1954)에 나타난 결과는 그렇지 않아 예상을 뛰어넘은 의외의 일로서, 이 배후에는 상당한 논쟁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비록 문자 개혁안까지는 수용하지 않았지만, ‘철자법’(1954)이 ‘신철자법’(1949)의 노선을 이탈한 것은 아니었으니, 기본적인 이론이나 원칙, 그리고 그 사상은 같은 기반의 脈絡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그 머리말에서 “..... 현행 조선어 철자법의 부분적인 동요가 존재하여 .....”라고 한 상황도 당시의 혼란했던 단면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되며, 그것은 ‘신철자법’(1949)과 ‘통일안’(1933)의 충돌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모든 분야의 정책이 정치 이념의 노선을 구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어문정책의 하나로 나타난 표기법 문제도 예외일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 외적인 요인들의 간섭이 강하게 작용했으리라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통일안’(1933)에 대한 비판은 그런 면에서 당연한 것이었고, ‘신철자법’(1949)이 전폭적으로 수용될 여건이었으나, 현실로 나타난 결정안은 역시 ‘통일안’(1933)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하는데 그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철자법’(1954)의 制約性을 그 머리말은 “..... 종래 철자법(1954)의 기준으로 인정되던 ‘통일안’(1933)에 적지않은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철자법’(1954)의 특성은 ‘통일안’(1933)의 부분적인 수정안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 Ⅲ. 2 '조선어 철자법'(1954)의 주요 규정

#### Ⅲ. 2. 1 맞춤법 규정

이제 '철자법'(1954)에 나타난 규정 가운데에서 특징적인 것을 가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우리말의 자모의 순서와 그 이름을 규정하였다. (1항)

이것은 '신철자법'(1949)에도 들어있지 않은 규정으로서, 물론 '통일안'(1933)에 준거하고 있으며, 철자법 체계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자모의 규정은 반드시 있어야 할 규정으로 평가되고, 이로써 체계 전개의 기반이 제시되었다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몇 개의 자모명이 '통일안'(1933)과 다른 것이 있어 눈길을 끈다.

	<u>'통일안'(1933)</u>	<u>'철자법'(1954)</u>
ㄱ	기역	기옥
ㄷ	디글	디을
ㅅ	시웃	시웃
ㅍ	쌍기역	된기옥

그리고 모음 기술에 있어 '철자법'(1954)은 기본 모음을 21개로 규정하고 그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한 것이 특이하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이와 같이 기본 모음을 확대하고 그 순서를 일정하게 하므로써 사전에 올리는 말의 순서를 크게 달라지게 한 것과 같은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2. '철자법'(1954)은 단어의 표기에 있어 형태주의 원칙을 그 기본으로 삼는다 했지만(2항), 일부의 단어들은 '오늘날의 언어의식'에 따라 적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3항) : 나타나다, 드러가다 ..... 부터, 조차.

이 규정은 철저한 형태주의 원칙을 표방한다고 했지만 ‘통일안’(1933)에서 달라진 것이 없으며, 다만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오늘날의 언어의식’으로 바꿈으로써 현실적인 표음주의를 반영하였다.

3. 어간말 자음 표기에 대하여.(4항) : 이 항의 규정은 북한 철자법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으로서, ‘신철자법’(1949)의 문자 개혁안으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철자법’(1954)은 당시로는 문자 개혁안을 留保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장래에 조선 문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머리말)이라 했고, 이에 따라 변칙 용언의 표기 원칙을 ‘오늘날 쓰이는 조선어 자모로써는 그 어간의 형태를 고정시킬 수 없거나, 또는 재래의 표기법상의 관습이 굳어져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가) 어간의 끝소리를 <ㄹ>-<ㄹ>으로 적는 경우 : 갈다, 갈고, 갈며, 가니, 갑니다, 가시니.

나) 어간의 끝소리를 <ㅅ>-<ㅅ>으로 적는 경우 : 낫다, 낫고, 낫지, 나아, 나오니.

다) 어간의 끝소리를 <ㅎ>-<ㅎ>으로 적는 경우 : 거똥다, 거똥고, 거똥지, 거똥오, 거똥니, 거똥면.

라) 어간의 끝소리를 <ㄷ>-<ㄷ> 적는 경우 : 견고, 견다, 견지, 걸어, 걸으니.

마) 어간의 끝소리를 <ㅂ>-<ㅂ/ㅍ>로 적는 경우 : 돕고, 돕지, 도와, 도우니.

바) 어간의 끝소리를 <ㄹ>-<ㄹ>로 적는 경우 : 어간의 끝소리 ‘르’가 <어>, <있>과 어우를 적에는 <-르러>, <-르렀>로 들린다고 하여 그대로 표기하므로써 ‘러번칙’을 인정하였다 : 푸르다, 푸르러, 푸르렀다.

사) 어간의 끝소리를 <ㄹ>-<ㄹㄹ>로 적는 경우 : 흐르다, 흘러, 흘렀다.

이상의 규정들은 ‘통일안’(1933)과는 ㅍ를 같이하여 달라진 것이 없으

나, '신철자법'(1949)와는 전적으로 系를 달리하고 있다. 한 단어의 異形態 표기를 허용치 않는 형태주의 표기법을 고수하기 위하여 기왕의 문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새 문자의 제정을 주장한 '신철자법'(1949)이 제안되고 있던 상황으로 볼 때 이들 규정은 매우 異例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로써 '신철자법'(1949)의 문자 개혁안이 얼마나 언어 현실과 乖離된 虛構의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아무튼 이 문자 개혁안에 대하여 '철자법'(1954)은 '장래에 조선 문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여 미루어진 과제로 다루었으나, 1958년 김두봉의 숙청이 있는 후 다시는 再論되지 않았다.

4. 한자어에서 본음이 <녀, 뇨, 뉴, 니>, <ㄹ>로 시작되는 것은 어느 위치에서나 본음대로 적고 발음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5항, 6항) :

녀자, 녕변, 뇨도, 뉴대, 니탄……  
략원, 량심, 력사, 로동, 료금, 리유……

이와 같은 한자어 표기의 원칙은 앞에 말한 변칙 용언의 어간 표기 원칙과는 상반되는 관계를 이루어 '통일안'(1933)과는 상충하며, '신철자법'(1949)과는 합치한다.

5. 한자어에서 모음 <꺠>의 표기는 <계><례><혜>만을 인정하였는데(7항) 이 밖에 '뎨, 폐'를 포함시킨 '통일안'(1933)을 축소 조정한 것이나 이에 대하여 '신철자법'(1949)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세계(o) — 세계(x)  
폐회(o) — 폐회(x)

단, 搨만은 본음대로 <계>로 적는다고 하였다. : 게시판, 게재.

6. 한자어 중 모음 <꺠>가 있는 음절로는 <회/외>만을 인정하였다. (8항) : 회의, 의학, 희망, 유회.

이 조항 역시 '신철자법'(1949)에는 없는 규정이며, '통일안'(1933)의 제 39항과 일치한다.

7. 설측음의 표기는 'ㄹㄹ'로 한다(10항)고 하여 '통일안'(1933)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 걸레, 벌레—(o) 거래, 걸네/버레, 벌네—(x)

그런데 '신철자법'(1949)는 '한 형태부안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설측음은 'ㄹ'로 적는다'고 하여 '거래, 버레'로 적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동일 형태부를 고정적으로 표기한다는 원칙을 지키려 한데서 연유한 무리였으며, 따라서 두 형태부 사이에서는 'ㄹㄹ'로 적고 있다. : 홀로, 길로.

8. 단어의 발음 표기는 발음에 따르지 않고 원형을 밝혀 고정시킨 어형으로 적는다(11항)고 하였으니 이 조항은 '신철자법'(1949)에서 새 문자에 해당하는 예를 빼면 세개의 표기법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규정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이들 세 표기법이 다함께 형태주의를 공동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9. 어간이 <아, 어, 여> 또는 <았, 었, 였>과 결합하는 조건 가운데 '통일안'(1933)과 다른 것으로 <ㄱ, ㅈ, ㅊ, ㄴ, ㄷ, ㄹ>인 경우 및 어간의 끝소리가 <하>인 경우: ..... 여, 였'의 규정이 있다.(13항 3): 개다, 개어, 개였다/되다, 되어, 되였다/취다, 취어, 취였다.

한편, '오르다'의 경우 '올라, 올랐다'로 적어(13항 1) '통일안'(1933)에 부합하나 '신철자법'(1949)이 이것을 '오라, 오랐다'로 적어야 한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신철자법'(1949)가 강하게 제기했던 형태주의의 표기를 일관되게 엄격히 적용한다는 원칙을 지양하고 부분적으로 표음주의를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10. 준말 표기에 있어 '음이 줄어진 대로 적는다'고 한 규정(16항)도 '신철자법'(1949)과는 크게 달라서 '신철자법'(1949)은 줄어진 대로 적지 않고 原形態 대로 적으려 했다.

뜨다 : 뜨이다, 뜨이여, 뜨이였다 ..... / 띄다, 띄여, 띄였다 .....  
 오시다 : 오시여, 오시였다 ..... / 오서, 오셨다 .....

11. 합성어 표기에 있어 '사이 ㅅ'소리가 나는 것과 구개음화한 'ㄴ'나 'ㄹ'가 나는 것은 그 중간에 '사이표'('')를 둔다고 규정하였다.(19항)

가) '사이 ㅅ'소리가 나는 것 : 그믐'달, 기'발, 길'짐승, 나루'배 .....

나) 구개음화한 ㄴ이나 ㄹ이 나는 것 :

접'이불, 공'일, 낮'일, 논'일, 낫'요강, 물'약, 버들'잎 .....

다) 한자어도 이에 준한다

군'적(郡的), 도'적(道的), 대'가(代價), 리'과(理科) .....

'신철자법'(1949)에서 '분리부'라 한 것을 명칭만 바꿨을 뿐 그대로 이어받고 있으며 '통일안'(1933)은 이 규정을 두지 않았다.

### Ⅲ. 2. 2 띄어쓰기 규정(51-55항)

띄어쓰기의 대원칙은 총론 3에서 명시하였는데, 그것은 '단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고 되어 있다. 그것은 '통일안'(1933) 총론 3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윗말에 붙이어 쓴다'고 한 규정과 일치한다. 한편, '신철자법'(1949)은 띄어쓰기에 대한 조항을 두지 않은데 반해 '철자법'(1954)이 '통일안'(1933)의 것을 수용하고는 있으나, 그다지 정밀한 것은 아니었다.

12.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는 단어마다 띄어 쓴다.(51항)  
 노동 신문, 삼국 유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13. 다음의 고유명사들은 띄어 쓰지 않는다.(52항) : 금강산, 우랄산, 금강, 지중해, 함경북도.

14. 사람의 성과 이름은 띄어 쓴다.(53항) : 김 일성, 리 순신, 울지 문덕.

15. 년, 월, 일은 해, 달, 날 단위로 띄어 쓴다.(54항) : 1950년 6월 25일

16. 한자어 중 접두사, 접미사로 인정되는 것은 붙여 쓰고 관형사는 띄

어 쓴다.(55항)

각급, 경공업, 반과학적, 비인간적.  
각 대학, 전 인민적, 제 문제.

### Ⅲ. 2. 3 문장부호에 대한 규정

문장부호에 대한 조항을 '통일안'(1933)은 부록으로 다루었으며, '신철자법'(1949)은 설정치 않았던 것인데 여기서는 8장에서 단일항(56항)으로 간략히 다루어져 있다. 따라서 그것들의 운용 규정을 정밀하게 기술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부호의 나열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문장부호에 대한 충분한 규정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규정이 거의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던 '조선어 규범집'(1966)(이후 '규범집'(1966)으로 약칭함)에 이르러서야 제자리에서 상세하게 규정된다.

17. 문장에 쓰이는 부호는 대략 다음과 같다면서 모두 11가지로 들었다.  
(56항)

점(.), 두점(:), 반점(;), 반두점(;), 의문표(?), 감탄표(!),  
인용표<< >>, 거듭인용표< >, 썬레(-), 점선(...),  
괄호( ), (( )), [ ], { }.

## Ⅳ. '조선말 규범집'(1966)<sup>9)</sup>

### Ⅳ. 1 이론적 배경

'규범집'(1966)은 그간 북한에서 진행된 국어연구의 성과를 결집한 매우 획기적이고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分斷 후 그들의 政權樹立과 6·25 動亂, 그리고 內外的으로 激變하는 政治 思想의 혼란을 거치는 가운데서 1958년 金料奉의 숙청은 국어 분야의 정책노선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

9) 「조선말 규범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6.

이었으며, 이로써 집요하게 주장되어온 문자개혁은 호된 비판과 함께 거세되고 말았다. 그후 그들은 이른바 주체사상에 입각한 독자노선을 표방하게 되며 이에 따라 언어정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2차에 걸친 金日成 敎示가 나왔고, 이어 '文化語'를 만들어내는 소위 언어혁명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규범집'(1966)은 바로 이러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그들의 合目的的인 의도에 따라 집체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었다.

북한의 언어관이나 정책의 특수성으로 보아 국어 연구 내지는 철자법 문제를 순수한 언어과학의 대상으로 다룰 수 없는 限界性이 있으나, 그래도 그 이전의 시기에는 비교적 언어의 내부적 요구를 重要視하여 왔다. 그러나 '규범집'(1966)에 이르러는 金日成의 64년의 1·3교시와 66년의 5·14교시를 '綱領的으로 받들고' 소위 主體思想의 言語 理論으로 무장되고 그것을 다그쳐 나가려는 강력한 정책의 수단으로 제정, 공포된 것이었다. 이러한 변혁은 일련의 정치적 목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당시의 言語政策은 民族主體思想에 立脚한 民族語 確立이라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민족어의 典型은 종래의 서울 중심의 '표준어'가 아니라 혁명의 수도인 평양에서 조성된 말 즉 '文化語'가 중심이 되어 국어를 통일적으로 改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내재하고 있는 '문화어'는 당연히 비 언어적 특성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언어 법칙으로 지배되는 질서가 아니라 언어 외적인 요구에 따라 언어의 질서가 人爲的으로 개편된 결과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어 운동에서 거둔 성과 가운데 비록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저의에 대한 경계와 그 진의의 향방을 바르게 이해해야겠다. 이러한 문화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남성우(정재영 공저 1990)에 제시된 그들의 문화어 규정을 참고하기로 한다.

1) 근로 인민 대중이 목적의식적으로 건설한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다듬어진 언어이다.

2) 당과 수령의 '주체적인 언어사상'을 구현한 언어이다.

3) 혁명의 붉은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발달한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다.

## 4) 민족어의 전형이다.

이상과 같이 전통적인 '표준어'의 破棄와 '문화어'의 출현은 言語의 단절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문화어가 출현하기 전에는 최소한 언어만이라도 남북이 하나의 공통어를 갖고 있다는 동질성이 확인되었으나 이제는 남북한이 각각 다른 기준어를 갖게 되므로써 두 체제의 국어가 한반도에 존재한다는 단절감을 갖게 한다. 그리하여 문화어의 출현은 남북 言語의 分斷이라는 또 하나의 분단을 가져온 민족적 비극이라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IV. 2 '규범집'(1966)의 주요 규정

이제 각 항의 규정 가운데에서 특징적인 것만을 '철자법'(1954)과 대비하면서 그 차이점을 살펴 보기로 한다.

## IV. 2. 1 맞춤법 규정

<총칙>은 '철자법'(1954)의 5개항 중 2개항만을 채택하고 있는데, 형태주의 표기 원칙과 橫書法을 재확인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일부 표음주의 원칙에 대한 규정이 배제되어 눈길을 끈다.

1. 자모의 수와 차례 그리고 이들은 '철자법'(1954)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자음 19, 모음 21 모두 40개 자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일안'(1933)의 24자모와는 크게 다르다. 이와 같은 차이를 빚은 까닭은 '통일안'(1933)이 자모를 文字素로 본데 반하여 '철자법'(1954)은 음소를 단위로 잡았기 때문이다.(1장)

2. 변칙 용언의 표기를 '철자법'(1954)과 같이 표음 원칙을 따르고 있어 <총칙>의 규정을 위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잘못이었다.(10항)

3. 어간 모음 'ㅣ, ㅑ, ㅓ, ㅕ, ㅗ, ㅛ'인 경우 '여, 엇'으로 적는 규정은

‘통일안’(1933)과 다르나 ‘철자법’(1954)과는 같은 것으로 이것 역시 <총칙>에 위배된다.(11항3)

4. 준말의 表記에서 ‘가하다-가타,多情하다-다정타’로 적음으로써 ‘철자법’(1954)에서 ‘가ㅎ 다, 다정ㅎ 다’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5. ‘철자법’(1954)에서 규정한 四夷표(‘)를 없앤다는 규정을 두었다.

6. 부사의 접미사 ‘이’, ‘히’가 분명치 않을 경우, 어간에 ‘하다’를 붙일 수 있는 것은 ‘히’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로 적는다고 하여, ‘철자법’(1954)의 규정을 한층 명료하게 했다.(24항)

7. ‘ㄹ’로 시작되는 한자어는 어느 위치에서나 본음대로 적는다(‘철자법’(1954)6항)는 규정을 바꾸었으며, 특히 아래와 같은 한자어는 변한 소리대로 적는다고 하여 어두의 ‘ㄹ’, ‘ㄴ’ 또는 ‘ㅇ’으로 적는 예외를 인정하였다.(26항) : 나팔(라팔 喇叭), 나사(라사 螺絲), 남색(람색 藍色), 노(로 櫓), 등

#### IV. 2. 2 띄어쓰기 규정

종래의 철자법 편제에서 띄어쓰기는 한 장의 성격으로 삽입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따로 떼어 맞춤법과 대등한 위상의 체계로 다룬 것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총칙에서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쓴다고한 원칙은 겉으로 보기에 기왕의 원칙과 다를 것이 없는 듯하나, 단어의 개념을 분석적으로 보았던 종래의 입장을 바꾸어 종합적으로 봄으로써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자모를 음절 단위로 묶어 쓰는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어휘부는 붙여 쓰기로’한 예외 규정을 둔 것도 큰 변화였다.

8. 토의 유무를 단어 경계의 기준으로 삼아 토없이 결합하여 한 대상이 되는 단위는 한 단어로 본다고 하여 종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2항)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껏 돕는다.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일으켰다.

15세기중엽 사회경제형편을 보면

이 규정은 종전의 원칙과 대비하여 크게 달라진 특징으로 지적되며, 이로써 복합어를 내부적으로 분석하여 띄어쓰는 일이 없게 되었다.

9. 고유명사는 붙여 쓴다.(2항) 8의 원칙은 일반적인 대상만이 아니라 고유명사나, 고유명사에 붙는 호칭까지도 붙여 쓰기로 했다.(2항, 2. 3)

로동신문, 리순신힌장.  
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이유회아주머니의 솜씨

이에 대해 ‘철자법’(1954)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는 각 단어마다 띄어 쓴다고 규정하여 ‘로동 신문, 삼국 유사, 제일 인민 학교.’와 같이 하였으며 사람 이름의 성과 이름을 띄어 썼다.

#### 10. 불완전명사는 붙여 쓴다(3항)

지금 바로 종을 칠것  
더 말할나위가 없다.

‘신철자법’(1949)과 ‘철자법’(1954)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던 것을 신설한 조항이다.

11. 대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불완전 명사와 어울린 것만 붙여 쓴다.(8항) : 이것, 그이, 저분.

12. 보조 동사나 보조 형용사는 붙여 쓴다.(10항) : 돌아가다, 젊어지다, 벌어지다, 읽고있다, 가는가싶다, 오고말고.

‘철자법’(1954)에서는 동사, 형용사에 관한 띄어쓰기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그에 반해 여기서는 세부적인 현실적 문제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전체적으로 집약되는 특징은 종전의 띄어쓰기 원칙이 가능하면 띄어 쓰는 경향을 취했던 것인데 반해 이것은 역으로 크게 모순되지 않는 한 띄어 쓰는 것을 지양하고 붙여 쓰자는 태도를 취한 점이다. 결국 이러한 기본태도의 설정에 따라 총칙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한 보조 용언이나 불완전 명

사와 같은 형식 요소들은 붙여 쓰도록 규정하였다.

13. 두 개 이상의 용언이 어울렸다 하더라도 하나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 하나로 녹아 붙은 것은 붙여 쓴다.(10, 15, 18, 19 항) : 떡고떨어지다, 간밤에, 이다음, 어느새, 한결같다, 할것없이, 두말말고, 아닌게아니라.

용언들이 결합하는 관계나 몇 개 단어들 어울려 광용구로 쓰이는 여러가지 미묘한 관계를 주로 의미의 단위성에 준거하여 붙여 쓰는 쪽으로 규정(3장, 4장, 5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규정은 종래의 것들을 크게 바꾼 것이며, 여기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총칙에서 밝히고 있는 기본원칙과 상충하는 모순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다듬게 되면, 서사언어생활의 상황 변화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14. 학술용어의 표기도 위의 취지에 따라 결국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지는 덩이를 단위로 띄어 쓴다고 하였다.(22항) : 작은물병아리, 나도국수나무, 꿩의다리아재비.

15. 그리고 한자 속어의 경우도 붙여 쓰는 원칙을 취했다.(23항) : 련전련술, 오십보백보, 대대손손, 동서남북.

#### IV. 2. 3 문장부호에 대한 규정

‘규범집’(1966)은 맞춤법, 띄어쓰기에 이어 문장부호법을 두고 있다. “문장부호는 문장들, 문장안의 각 단위들을 뜻과 기능에 따라 갈라주기 위하여 친다”고 총칙에서 밝혔으며, ‘철자법’(1954)과 비교해 볼 때, 명칭에서 ‘씨레’를 ‘이음표’로 바꾼 것과, ( ) 반달괄호, [ ] 꺾쇠괄호의 기능과 명칭을 구분하였으며 풀이표(-), 밀점(...), 숨김표(000), 갈음표(〃), 물결표(~) 등의 5가지를 추가하여 모두 17개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규범집’(1966)의 규정문은 보다 구체화하고 정밀화되었다.

## V. '조선말 규범집'(1988 개정안)<sup>10)</sup>

### V.1 '조선말 규범집'(1988 개정안)의 개요

'조선말 규범집'(1988 개정안)(이하 '규범집'(1988)로 약칭함)은 '규범집'(1966)을 개정한 것으로 가장 최근 즉, 현행의 맞춤법 규정이다. 이것의 체계는 맞춤법(7장), 띄어쓰기(5장), 문장부호법(20장), 문화어발음법(10장), 내려쓰기의 5부로 구성되어 있다. '규범집'(1966)의 체계와 세분화된 항목들을 모두 그대로 두면서 보다 큰 장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개정된 '규범집'(1988)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규범집'(1966)의 용어법이 주로 한자어로 되어 있던 것을 모두 고유어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이 '규범집'(1988)은 '규범집'(1966)의 용어 수정본으로 이해된다. 그 개정된 용어들의 주요 예들을 대비해 보면 이러하다. 어간-말줄기, 설측음-혀엿소리, 음절-소리마디, 합성어간-합친말줄기, 합성어-합친말, 어근-말뿌리, 접두사-앞붙이, 접미사-뒤붙이, 폐쇄음-닫김소리, 의성·의태어-본딤말, 한자어-한자말, 접속토-이음토, 종결토-맺음토, 호칭어-부름말, 삼입어-끼움말, 감동어-느낌말, 동화현상-닮기현상 등이다.

### V.2 '규범집'(1988)의 주요 규정

#### V.2.1 맞춤법 규정

1. '규범집'(1988)은 그 맞춤법 총칙에 '규범집'(1966)에 들어 있는 가로쓰기 원칙을 따로 떼어 말미에 별도의 '가로쓰기'를 두었다.

2. 맞춤법 2항에서 자음의 배열 순서를 'ㄱ, ㄴ, ㄷ, ㄹ, …… ㅍ, ㅊ, ㅋ, ㆁ, ㆁ, ……'으로 하던 것을 '규범집'(1988)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10) '조선말규범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사회과학출판사, 1988.

...’등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로써 오래도록 관용되어 온 자모의 순서가 달라졌고, 이에 따라 사전의 올림말의 순서도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ㅇ’의 명칭이 ‘규범집’(1966)에서는 ‘으’이던 것이 ‘규범집’(1988)에서는 ‘웅’으로 바뀌었다. 즉 ‘ㅇ’의 초성 자음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음절말 자음의 기능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2항)

3. 변칙용언 표기에서 다음의 예들을 첨가하였다.(10항)

10항 8) 고프다-고프고, 고프지, 고프, 고프다 ……(‘으’변칙)

9) 푸다-푸고, 푸지, 피, 뿔다 ……(‘우’변칙)

4. 사이표 (‘)를 없앤다는 규정을 삭제했다.(‘규범집’(1966)18항)

5. 어근과 접사의 파생어 형성에서 ‘ㄹ’탈락을 인정하는 표기 규정을 신설하였다.(20항) : 가으내, 무질, 겨우내, 바느질.

#### V. 2. 2. 띄어쓰기 규정

띄어쓰기는 ‘규범집’(1966)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을 충실하게 이어 받고 있는 것으로 ‘규범집’(1988)은 그 기준의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칙을 더욱 정밀하게 규정할 필요를 느꼈으며 이에 따라 예들을 보충한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 이에 더 추가된 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6. 명사들이 토없이 직접 어울린 경우의 띄어쓰기에 대한 제 2항의 내용을 보충하여 더욱 정밀화하였다. 이때의 원칙은 역시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지는 덩이를 단위로 띄어쓴다’는 것이다.

1) 일반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

가) 정부조직과 직명 사이의 줄어들지 않는 여부에 따라서  
조직계획처 처장.

나) 일정한 단계를 이루면서 결합될 때 띄어 쓴다.

지난해 늦가을, 어느날 이른새벽에.

다) 부문, 분야, 기관, 담당, 관계를 나타내는 때는 앞말에 붙여 쓴다.

: 관계부문 일꾼들, 사회과학과목관계 교원들.

2) 고유한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념상 하나의 대상으로 묶여지는 덩이'를 단위로 띄어 쓴다고 원칙을 명시하였다.

3) 고유한 명칭의 앞뒤에 보통 명사적인 것이 어울린 경우에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는 띄어 쓴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탁구선수,

로동행정부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7. 특수한 말, 특수한 어울림에서의 띄어쓰기를 세밀하게 보충하였다.

(5장) : '규범집'(1966)의 5장 "섞갈리기 쉬운 것들의 띄어쓰기"와 6장 "특수한 말의 띄어쓰기"를 통합하여 보충하고 개정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표기 예들을 보다 단순화하였다.

8. 동격명사는 띄어 쓴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17항)

신문 <<민주조선>> 창간, 박사 김준석동지 집필원고.

9. 고유어로 된 전문용어의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과 속담, 성구에 대한 띄어쓰기 규정을 신설하였다.(21, 22항)

### V. 2. 3 문장부호법에 대한 규정

'규범집'(1988)에서는 문장부호에 대하여 그 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10. 문장부호의 이름을 바꾸었다.(1항) 이렇게 문장부호의 이름을 바꾸는 것 또한 모든 문법 용어를 수정하는 작업에 맞추어 실행된 것이다. 다음의 바뀐 용어들을 보기로 하자. 의문표-물음표, 감탄표-느낌표, 반달괄호-쌍괄호.

11. 동격어 뒤에서도 반점을 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5항 6)

12. 물음표 사용에 있어서 표현을 꾸미기 위한 (수사학적 물음) 문장에서도 물음표를 사용하지 않고 점을 치는 것으로 바꾸었다.(6항)

13. 풀이표에 대한 조항에서 특수한 글에서 주어와 술어가 토없이 맞물렸을 때 그 사이에 칠 수 있다고 하여 용례를 첨가하였다.(9항 6)

철호-통신병, 나-〈갈매기〉호 선장

14. 거듭인용표 (< >) 조항을 인용표 조항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12항)

15. 괄호에 대한 조항을 매우 간소화 하였다. (13항)

쌍괄호—본문의 보충말과 인용의 출전을 표시할 때

꺾쇠괄호—괄호가 두번 중복될 때 바깥 것은 꺾쇠괄호로 한다.

## VI. 맺는말

이상 북한의 表記法 體系의 原理와 그 變遷에 대해 살폈다. 한마디로 集約할 수 있는 結論은 形態主義와 形態音素論의인 表音主義를 合理的으로 절충하여 짜여진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體系原理가 그대로 유지 계승 되어져 있다는 사실의 확인이다.

表記法에서 가장 難解한 문제가 되고 있는 발음의 현실과 형태관념의 對應關係에서 제기되는 갈등을 그들의 특수한 언어의식의 기반위에서 풀으려고 한 부분적인 노력과 混線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도하는 방향에서 소위 目的意識의인 表記法을 導出해 낼 수 없었던 것은 역시 言語의 本質을 歪曲, 誤導했던 것에 起因한다.

위의 논의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요약하는 뜻에서 간략한 對比表를 제시하기로 한다.

<표>

	표기법						문장부호	
	차모체계	분리부	어두 한자음 ㄹ, ㄴ	설측음	활용어미	준용표기		띄어쓰기
통일안 (1933)	24 자모체계	규정없음	구개음화인정 ㄴ, ㅇ으로 표 기	'ㄹ, ㄴ' 결레, 벌레	변치활용어미 오르다 올라 올랐다	준용표기 인정 격음표기 불허	단어는 띄어쓰 고 토는 붙여 씀.	문장부호 부록으로 다름.
신철자법 (1949)	· 명시하지 않음 · 신문자 6개 설 정	결음 뒷 구개음 표기에 사용	구개음화 부정 ㄹ, ㄴ으로 표 기 '람심, 라팍'	ㄱ) 한 형태부 丙 'ㄹ, ㄴ' 거레, 버레 ㄴ) 두 형태부 사이 'ㄹ, ㄴ' 홀로, 길로	오르다 오과 오랐다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철자법 (1954)	부합자 포함 40 자모 신문자폐기	사이표로 개칭	구개음화 부정 '람심, 라팍'	'ㄹ, ㄴ' 결레, 벌레	올라 올랐다	다정하다 다정타	단어는 원칙적 으로 띄어씀.	규정있으 나 미약함
구범집 (1966)	40 자모	사이표 폐기 명 문화	부분인정 나팍, 나사, 람심	결레, 벌레	올라 올랐다	다정타	하나의 의미 덩 어리는 붙여씀.	대폭 보강 함.
구범집 (1988)	40 자모	사이표 폐기 규 정 삭제	부분 인정 요기(로기) 오뉴월(오루 월)	결레, 벌레	올라 올랐다	다정타	포가 없을 때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 지는 단위로 띄 어씀.	보강하고 용어를 수 정함.

참 고 문 헌

- 김민수(1989) 북한의 국어연구, 일조각
- 유복상(1989) 북한의 맞춤법, 「북한의 말과 글」 고영근 편. 을유문화사
- 남성우, 정재영(1990) 북한의 언어 생활, 고려원
- 전수태, 최호철(1989) 남북한 언어 비교, 녹진
- 이승욱(1989) 북한의 문화어에 대한 연구, 동아연구 18
- \_\_\_\_\_ (1990) 北韓의 國語 形成과 그 研究의 顛末, 동아연구 20
- 「조선어 철자법의 기초」(1), (2) <<조선어 연구>> 1권 5호. 1949
- 「조선어 철자법」 과학원. 1954
- 「조선말 규범집」 내각직속국어사정위원회.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 「조선말 규범집」 국어사정위원회, 사회과학출판사 1988